

저작권 문화



박방영, 들꽃-2003-S91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부르는 노래도 저작권 문제가 되나요?

영리성 여부를 떠나 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 혹은 일부 등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직접 사용이 아닌 간접 사용이라면 어떨까? 영화를 제작 중인 경우,
영화 속 주인공이 유명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촬영하게 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일까?

Q

영화과 학생입니다. 졸업작품으로 단편 영화를 제작했는데,
제가 직접 주인공으로 출연하여 엔딩 곡을 불렀습니다.
이때, 영화 속에서 부른 '노래'도 저작권 문제가 되나요?





음악에 관한 권리처리

생각해보면 영화에 음악이 사용되는 장면은 부지기수다.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이용 유형은 음악이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경우. 인트로에 나오든지 엔딩 부분에 나오든, 아니면 영화 중간 중간에 삽입되든, 이런 방식의 영화음악은 정말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이용하는 것도 이번 영화를 위해 새롭게 창작한 음악일 수도 있고,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음원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기존 음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새롭게 편곡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기존 음원을 새롭게 녹음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 새로 녹음을 할 때 새로운 가수가 노래를 부르게 할 수도 있다. 각각의 이용 유형마다 작곡가, 작사가, 음반제작자, 가수, 연주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권리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면 이런 유형은 어떻게? 주인공이 혼자 집 소파에 앉아 기타를 치면서 김광석의 '흐린 가을에 편지를 써'라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 아니 주인공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데 김광석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라는 노래가 유희열의 스케치북이라는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장면. 이러한 장면 모두에 대하여 영화제작자는 음악에 관한 권리처리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주인공이 홍대 거리를 걷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었는데, 마침 길거리 버스킹에서 어떤 무명가수가 '벚꽃엔딩'을 부르고 있다. 이어 거리를 어슬렁어슬렁 걷고 있는데 카페에서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고 주인공은 거기에 맞춰 흥얼흥얼 노래를 따라 부른다. 기본적으로 모두 권리처리를 해야 한다.

'음악' 한 곡에 숨겨진 권리

우리가 '음악'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음악에는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등의 권리가 켜켜이 숨겨져 있다. 이 중 하나만 놓쳐도 나중에 영화 상영금지 처분이라는 어마어마한 낭패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음악에 관한 권리자는 모두 허락 없이 사용했으니 그 음악에서 작곡 부분은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음악을 이용할 경우에는 권리자를 찾기도 어렵지 않고 또 그 권리자들이 신탁단체에 자신의 권리를 맡겨

놓았기 때문에 그 단체를 통해 권리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 곡의 경우 만만치 않다. 프랑스 또는 독일 같은 유럽의 경우 한국과 같이 신탁단체를 통해 권리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때로 어떠한 권리는 신탁해놓지 않을 수도 있어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또한 권리처리를 할 때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일부를 빠뜨리기도 한다. 실제 외국 곡을 사용했고, 에이전시를 통하여 권리처리를 다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일부를 빠뜨린 경우도 있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외국에 영화를 수출했다가 그 국가에서 소송이 걸리면 정말 아찔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영화 중 2000년대 이전에 만든 영화 중에는 이렇게 외국 곡을 영화에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가 정말로 많았는데, 이러한 영화들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외국에 수출될 수 없었다고 한다.

정확한 이용허락의 필요성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영화 '건축학개론' 사건을 기억하는가. 이 영화에 사용되었던 김동률의 음악 등에 관해 음악 저작권자와 영화 상영관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다. 영화 제작 당시 음악 이용에 관해서 제작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허락한 것은 복제에 국한한 것이고, 영화 상영에 필요한 공연 허락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법정까지 가게 된 사건이다. 이것도 결국 복잡한 음악 저작권의 권리처리에 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다.

저작권은 복제권, 전송권, 방송권, 공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용자는 이용 유형에 따라 정확한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복제와 전송 형태로 이용하려면 정확하게 복제와 전송을 특정해서 이용허락을 얻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저작권 권리처리 분야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분야가 음악저작물 이용이고 이에 대하여는 정말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어설피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느니 패러디니까 괜찮다느니, 3초 정도 이용한 것이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큰코 다치게 된다. ❖